

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. 1. 30 선고 2017가단7585 판결 [건물철거및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A

피고1. B

2. C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9. 1. 30.

주 문

1. 원고에게,

가.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,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,

나. 피고 C은 위 건물에서 퇴거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(무변론 판결)

판사이수웅

별지